

검토보고서

안건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	전산정보과	1

(2012. 9. 10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8월 23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2년 8월 28일

나. 의안번호 : 12-65

4. 관련근거

가.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법률 제10465호, 2012.3.30)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 조례안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신설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과 우리 구 행정기구 일부개편으로 관련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」를 이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.

< 주요내용 >

- (1) 조례안 제명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기본 조례」로 변경함.
- (2) 안 제2조에 제18호 및 제 19호를 신설하여 안 같은 조 제18호에서는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19호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음.
- (3) 안 제7조제1항에서는 CCTV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「정보화전략위원회」의 심의·조정 사항에 추가함.
- (4)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구 의원·공무원을 지역주민·관계전문가로 변경하여 폭넓게 구성인원을 수용함.
- (5) 안 제8조에서는 제4호부터 제9호까지 6개호를 신설하여 CCTV에 대한 설치 장소선정,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규정마련, 심의, 예산 또는 인력협의 조정,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 시 자격심의,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·제공 시 심의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기능에 추가함.
- (6) 안 제23조제3항을 신설하여 정보통합센터 운영에서 구청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CCTV 통합관리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함.

< 검토의견 >

개정된 「개인정보보호법」과 관련된 영상정보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과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우리 구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
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